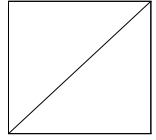


IV

부의안건



의안번호	제 1 호	의 결 사 항
의 결 년 월 일	2014. 12. 26. (제 8 회)	

재단법인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정관 변경(안)

이사회 안건

제 출 자	한국장례문화진흥원 원장 양 종 탁
제출년월일	2014. 12. 26.

정관 일부 개정(안)

1. 의결주문

- 재단법인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정관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.

2. 제안사유

- 늘어나는 국내외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장례지원 업무의 수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, 현행 정관에 규정된 사업에 대한 용어를 현실적으로 개정하고자 함

3. 정관 변경 절차

- 재단법인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(정관 제36조)

- 붙임 1. 정관 일부 개정(안)
2. 정관 변경 신·구 조문 대비표

[붙임 1]

정관 일부 개정(안)

제4조(사업) 진흥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장사정보시스템 운영 및 개발
2. 장사정책(법령) 지원 및 상담
3. 장사정책 및 장례문화와 관련한 연구·조사, 교육·홍보
4. 장례문화 관련 국내외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
5. 국내외 재난 발생 시 친환경 장례 지원
6. 장사시설 현황조사 분석 및 협력체계 구축
7. 진흥원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및 수익사업
8. 그 밖에 장사정책 및 문화 등과 관련하여 주무관청,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 또는 지원하는 사업

부 칙

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○ 제1장 총칙 제4조(사업)

현 행	개정안
<p>제4조(사업) 진흥원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장사정보시스템 <u>위탁운영</u> 2. 장사정책 및 장례문화와 관련한 <u>정책 개발 연구 및 지원</u> 3. 장사정책 및 장례문화와 관련한 <u>콘텐츠 개발 및 교육·연수·홍보사업</u> 4. 장사정책 및 장례문화와 관련한 <u>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</u> 5. 장사정책 및 장례문화와 관련한 <u>자료 조사 및 수집</u> 6. 장사시설 운영에 대한 <u>모니터링</u> 7. 진흥원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<u>부대사업 및 수익사업</u> 8. 기타 장사정책 및 문화 등과 관련하여 <u>주무관청,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 또는 지원하는 사업</u> 	<p>제4조(사업) 진흥원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장사정보시스템 <u>운영 및 개발</u> 2. <u>장사정책(법령) 지원 및 상담</u> 3. 장사정책 및 장례문화와 관련한 <u>연구·조사, 교육·홍보</u> 4. 장례문화 관련 <u>국내외 유관기관 협조 체계 구축</u> 5. <u>국내외 재난 발생 시 친환경 장례 지원</u> 6. <u>장사시설 현황조사 분석 및 협력체계 구축</u> 7. (현행과 같음) 8. <u>그 밖에</u> 장사정책 및 문화 등과 관련하여 <u>주무관청,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 또는 지원하는 사업</u>